

『대구광역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으로, 국내외 실증 및 해외인증을 통한 지역 AI 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및 시장성 확보를 위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는 특구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1. 글로벌 혁신특구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특례와 해외실증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을 통해 첨단기술의 선점과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 선점 및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도입

2.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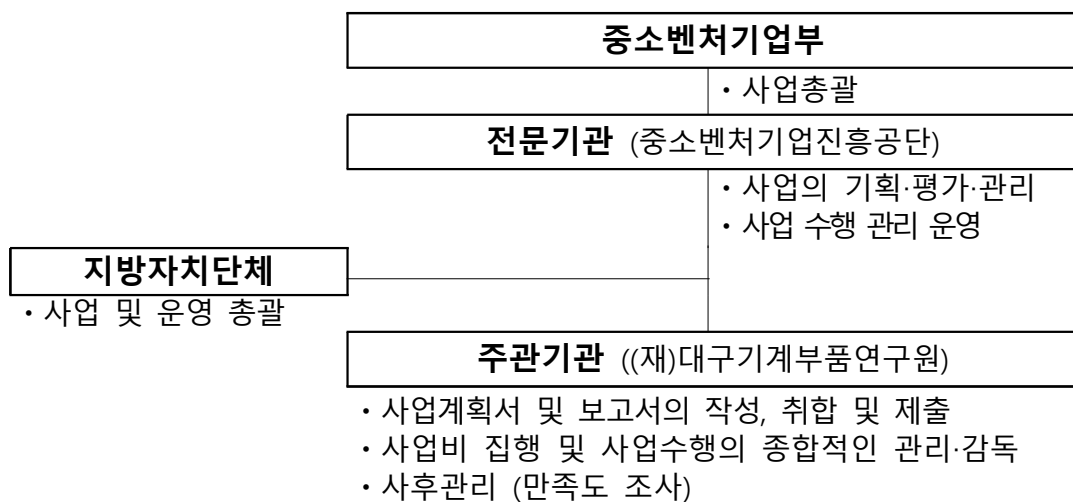
- ☐ 사업명 :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 사업
- ☐ 특구명 : 대구광역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 ☐ 특구 지정기간 : 2025. 6. 1. ~ 2029. 12. 31. (4년 7개월)
- ☐ 사업 기간

구분	1차년도(7개월)	2차년도(12개월)	3차년도(12개월)	4차년도(12개월)
연차별 지원기간	2025. 6. ~ 2025. 12.	2026. 1. ~ 2026. 12.	2027. 1. ~ 2027. 12.	2028. 1. ~ 2028. 12.

□ 사업 목적

- 국내외 실증 및 해외인증을 통한 지역 AI 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및 시장성 확보
-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된 新기술의 국내 및 해외 실증을 통해 효과성 검증 및 Track Record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수요 대응
- 국내외 영상정보 AI 학습을 활용한 로봇 제작 및 실증과 AI 자율주행 로봇의 도로 내 작업 실증 지원

□ 사업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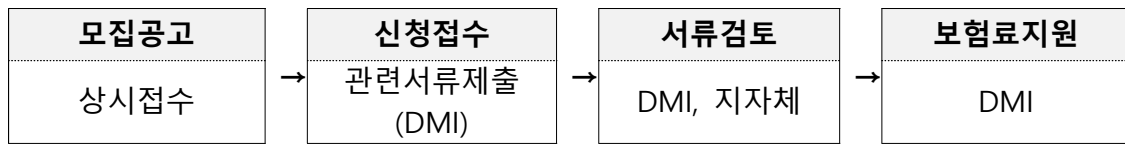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국내) 신산업 보험 지원
-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 실증 시 실증 보험 지원
- 실증에 참여하는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대인/대물) 가입 지원

지원유형	지원 방향
책임보험료	특례와 관련된 사업 국내 실증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 지원
유의사항	※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 : 해당 금액 특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 ※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신산업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 유지기간 내에 특구사업자가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특구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지원된 보험료는 전액 환수 조치 ※ 특구사업자는 국내 실증 착수 전 신산업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특구법」 제88조 제2항 위반에 해당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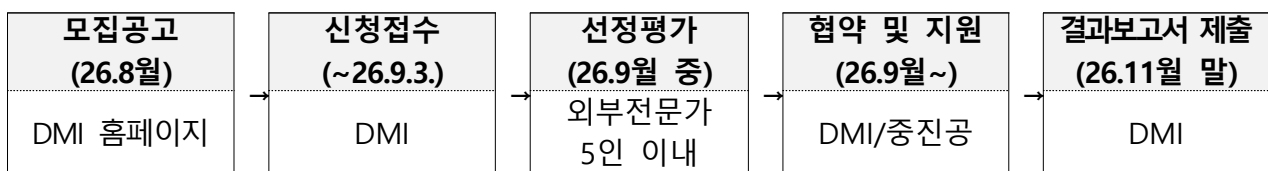
○ (해외) 글로벌 진출 지원

- ~~해외 거점 구축을 통한 실증 공간 제공과 미국, 유럽 등의 인증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인증 지원~~

~~— (현지실증) 美 현지 기관·기업과 해외실증 사이트 구축을 통한 현지 실증 지원(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지정 및 관리 등)~~

- (해외인증) 미국(UL), 유럽(CE) 등 해외인증 획득에 직업 소요비용 지원 (인증에 필요한 성능시험(Test), SW 정적·동적 분석 비용,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문서 작성 등)

- 지원절차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순번	사업 내용	지원기업 수	기업당 지원 규모 (민간 부담금 제외)
1	신산업 보험	22개 기업 이내	6,300,000원 이내
2	해외인증	2개 기업 내외	115,500,000원 이내

* 기업별 사업비 구성은 국비 70% 이내, 지방비 20% 이상, 민간 부담금 10% 이상으로 구성

* 지원기업 수 및 기업당 지원 규모는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보험 및 글로벌 진출(해외실증·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 기업지원 제외대상

- ①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전 제외처리
- ② [별표1]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참조

[특구 지원사업 신청 제한기업 요건]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KSIC)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4. 사업비 관련 사항

□ 사업비의 조성

- (구성) 국비, 지방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
 - * 관련 규정 : 운영요령 제22조(사업비 계상) ~ 제24조(민간부담금)
- (부담 기준) 사업비의 부담 기준은 중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국비 70% 이하, 지방비 20% 이상, 민간부담금 10% 이상으로 정함
 - 민간부담금의 경우,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매칭 필수
- (민간부담금)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고, 수행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수행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여야 함
 - 중견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으로 정함
 - 중소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으로 정함
- * 근거 : 운영요령 제24조(민간부담금) 제3항을 따르되, 중소기업은 7년 미만 중소기업 기준 적용

□ 사업비의 지급

- (교부방법)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주관기관에게 지급
 - 국비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진도점검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 수혜기업은 ‘e나라도움’을 통하여 국비를 교부/집행/정산 진행
- * 관련 규정 : 운영요령 제25조(사업비의 지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 지방비 보조금은 ‘e호조’, ‘보탬e’ 등 별도 시스템을 통해 교부
- (통장 개설)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이 입금될 통장 각각 1개씩 총 3개 개설 필요함
 - 각 통장에서 다른 사업비 통장으로의 임의적인 금액 이동 불가
 - 각 사업비 통장은 해당 사업 관련 용도 외 사용금지

5. 신청 및 접수 안내

- ☐ 공고기간 : 2026. 8. 20.(목) ~ 2026. 9. 3.(목) 18:00까지
- ☐ 접수기간 : 2026. 8. 20.(목) ~ 2026. 9. 3.(목) 18:00까지
- ☐ 접수방법 : 해당 제출 서류 작성 후 아래 이메일로 제출

접수 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연구1동 306호 • 담당자 : 기계로봇연구본부 기계로봇연구본부 장은실 책임연구원 • 연락처 : TEL. 053-608-2045, FAX. 053-608-2039 • E-mail : zem727@dami.re.kr
	• 담당자 : 기계로봇연구본부 기계로봇연구본부 김성신 선임연구원 • 연락처 : TEL. 053-608-2072, FAX. 053-608-2039 • E-mail : kss0603@dami.re.kr

6. 제출 서류

☐ 신산업 보험

- 제출 서류 : [붙임1] (양식)글로벌 특구 제출서류_신산업 책임보험 참고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비고
1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신청서	HWP	붙임1_서식1 참고
2	신산업 책임보험 사업계획서	PDF	붙임1_서식2 참고
3	사업자등록증	PDF	
4	통장 사본	PDF	

※ 선정 이후, 보험 가입 시 책임보험 증권,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제출 필요

☐ 해외인증

- 제출 서류 : [붙임2] (양식)글로벌 특구 제출서류_해외인증 참고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비고
1	해외인증 지원신청서	PDF	붙임2_서식1 참고
2	과제 수행계획서	HWP	붙임2_서식2 참고
3	사업자등록증	PDF	
4	재무제표(최근 3개년)	PDF	
5	4대보험 가입자 명부	PDF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법인 또는 대표자)	PDF	
7	법인등기부등본	PDF	
8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PDF	붙임2_서식3 참고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붙임2_서식4 참고
10	기업 부담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PDF	붙임2_서식5 참고
11	청렴이행서약서	PDF	붙임2_서식6 참고
12	외주용역 내역서(해당 기업만 작성)	PDF	붙임2_서식7 참고

※ 과제 수행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7. 기타 사항

○ 사업비 지원 가능 비용

- 사업비는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가입, 글로벌 진출(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작성 시, 보조세목을 기준으로 작성

- 참고 1. 사업비 사용 가능 항목 참조

보조세목	내용
보수, 일용임금 등	• (인건비) 특구사업자 소속직원이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 불가 ※ 정부지원금의 50% 까지 계상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 (보험료) 신산업 실증 책임 보험 가입 보험료
국내여비, 국외여비	• (여비·체제비) 특구사업자 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체류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재료비 등	•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관련된 아이템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도구, 데이터 등 구입비
일반 수용비 등	•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
일반용역비 등	• (외주용역비)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특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등	•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통역비 등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자본적 경비제외)
임차료	• (임차료)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및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회의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불가	• 실증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 • 실증참여 기업이 기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 시설비·기계장치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특근매식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 등)

참고1

사업비 사용 가능 항목

구 분	내 용	보조세목
보험료	• 신산업 실증 책임 보험 가입 보험료	공공요금및제세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일반수용비 등
컨설팅비	•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일반수용비 등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관련된 아이템의 제품 (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도구, 데이터 등 구입비	재료비 등
외주용역비	•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특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일반용역비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등 (자본적 경비 제외)
인건비	• 특구사업자 소속직원이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 불가능 ※ 정부지원금의 50% 까지 계상 가능	보수, 일용임금 등
지급수수료	•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통역비 등으로 집행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등
여비·체제비	• 특구사업자 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체류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해외실증기관 또는 해외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행사 또는 기술개발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 등 참석을 포함	국내여비, 국외여비
광고선전비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기업 제품(서비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수용비 등
임차료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회의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임차료
보조금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경상보조
지원불가	• 실증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 • 실증참여 기업이 기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 시설비·기계장치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특근매식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 등)	-

사전검토 기준

(요령 제16조 관련)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사업 시작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금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사업 시작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단, 1개월 이내에 해당 문제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시작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시작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구 분	사전지원제외대상	사후관리대상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말 감사의견이 “한정”

구 분	사전지원제외대상	사후관리대상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적정성 검토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④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대한 기업(주관) 수행가능 과제 수

- 기업이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타 과제의 잔여기간이 협약 시작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사업화지원, 기반조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 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기타 장관이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